

제19장
투명성

제19.1조
공표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전자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국은
 - 가. 자국이 채택 또는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 다. 관련이 있는 한, 그러한 의견을 검토한다.
3. 제19.2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세계무역기구로의 적절한 통보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또는 그 당사국의 공식적이고 공개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 당사국이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19.2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이 그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4. 이 조에 따른 모든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된다.

제19.3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할 때 다음을 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리고 자국의 법에 따라,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제공한다.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혜용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가 자국의 법을 기초로 하며, 이를 따르도록 보장한다.

제19.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국의 법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9.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확립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